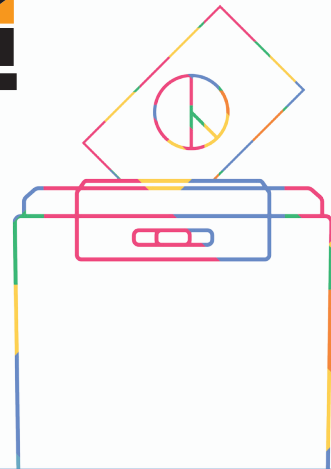


2020. 4. 15.
제21대 국회의원선거

개표관리 매뉴얼



“개표관리 매뉴얼”은

개표사무관계자가 개표흐름을 알고

정확하게 개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표준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
이 책자를 적극 활용하여 사전에 임무를 숙지하시기 바라며,
실제 개표과정에서는 관련규정 및 편람, 상급위원회 지침 등에 따라
보다 효율적인 개표방안을 강구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.

“개표사무원”은

투표지를 정리·확인할 때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,
반복 확인·점검으로 정당·후보자별 득표수를 정확하게 집계해야 합니다.

유·무효 판단이 어려운 투표지 또는 이의제기된 투표지는
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보고하여 처리합니다.

※ “유·무효투표 예시”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확인합니다.

● 이 책자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다음과 같이 줄여서 표기함

위원장

- 구 · 시 · 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

위원

- 구 · 시 · 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

사무국(과)장

- 구 · 시 · 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(과)장

투표록 사본

- 투표록의 “투표상황 및 투표용지 수령·교부상황”이 기재된 면



아름다운 선거
행복한 대한민국

CONTENTS

I. 개표준비

-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개표사무관계자 출석 확인 | 07 |
| 2. 우편투표함, 관내사전투표함, 재외투표함 개표소 이송 | 08 |

II. 투표함 등 접수

-
-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선거일투표함 등 확인·접수 | 10 |
| 2. 선거일투표함 등 인수·적치 | 11 |

III. 개표개시

-
- | | |
|---------------|----|
| 1. 개표개시 선언 | 14 |
| 2. 개표사무관계자 선서 | 14 |
| 3. 진행요령 등 안내 | 14 |

IV. 개표진행

-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V-1. 선거일투표의 개표 | |
| 1. 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 정리 | 16 |
| 2. 정당·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| 19 |
| 3. 투표지 심사·확인 및 집계 | 24 |
| 4. 개표상황표 확인 | 29 |
| 5. 정당·후보자별 득표수 검열·공표 | 30 |
| 6. 개표상황 보고 | 31 |
| 7. 투표지 등 정리·보관 | 33 |

-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V-2. 관내사전투표의 개표 | |
| 1. 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 정리 | 35 |
| 2. 정당·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및 심사·집계 | 35 |
| 3. 개표상황 확인·검열·공표·보고 및 정리 등 | 36 |

IV-3. 거소·선상투표 및 관외사전투표의 개표

1. 투표함 개함 및 회송용봉투 확인	38
2. 봉투 개봉 및 선거(구)별 투표지 구분·정리	39
3. 정당·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및 심사·집계	40
4. 개표상황표 확인	41
5. 정당·후보자별 득표수 검열·공표 및 보고	41
6. 투표지 등 정리·보관	41

IV-4. 재외투표의 개표

1. 투표함 개함 및 회송용봉투 확인	43
2. 봉투 개봉 및 투표지 구분·정리	45
3. 정당·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및 심사·집계	46
4. 개표상황표 확인	46
5. 정당·후보자별 득표수 검열·공표 및 보고	46
6. 투표지 등 정리·보관	46

V. 개표소 질서유지

1. 개표소 출입·관람 등 제한	48
2. 개표질서 문란행위자 등의 처리	49

VI. 투표의 효력결정

1. 투표의 효력 판단기준	51
2. 이의제기 투표지의 효력결정 방법	53

VII. 부 록

1. 개표상황표의 선거인수 등 기준	55
2. 개표상황표 작성예시	56
3. 투표함 등 봉쇄·봉합·봉인 누락 등에 대한 확인서(예시)	59
4. 투표록 기재사항 누락 등에 대한 확인서(예시)	60
5. (사전)·(우편)·(재외)투표함 이상유무 확인서(예시)	61
6. 투표지심사계수기 사용요령	62

I

개표준비



1. 개표사무관계자 출석 확인
2. 우편투표함, 관내사전투표함, 재외투표함 개표소 이송

1

개표사무관계자 출석 확인



위원

- 오후 5시까지 구·시·군위원회 사무실에 출석
- 우편투표함, 관내사전투표함, 재외투표함 이송시 또는 그 이전에 개표소로 이동
- ※ 개표진행 중에는 항상 재적위원 과반수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개표개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표소를 떠나지 않도록 함.
- ※ 우편투표함은 거소·선상투표함과 관외사전투표함을 말함.

개표 사무원

- 개표관리교육 시작 30분 전까지 출석
- 출석확인인 개표소 입구의 별도 장소에서 일괄 처리하거나 개표소내 각 부서별로 등록부를 비치하고 책임사무원 등에게 출석확인을 위임할 수 있음.
- ※ 저녁식사를 하고 개표개시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도록 조치

협조요원 (전기·통신· 의료·소방 등)

개표개시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조치

경비요원

- 오후 5시부터 개표장소 정문에서 교통정리 및 출입차량을 통제하고 필요시 출입자를 검문·검색
- 개표소 출입구에서도 출입자를 엄격히 통제

참관인

- 개표개시 전까지 출석
- 개표관리 교육에 참석시키는 경우에는 교육개시 전까지 출석 안내

2

우편투표함, 관내사전투표함, 재외투표함 개표소 이송



우편투표함 관내사전 투표함 및 재외투표함 개표소 이송

- 우편투표함 및 재외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시 후에 개표참관인(정당·후보자별 1인씩) 참관하에 봉쇄·봉인하고 그 과정에 참여한 위원 및 경비경찰(2인)의 동반하에 관내사전투표함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
- 우편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 이송시에는 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(전산자료 복사본 포함), 거소·선상투표신고서(철), 거소투표 등 발송·접수록, 사전투표록, 선상투표 발송·접수상황 등 관계서류도 함께 가지고 가야함.
- 재외투표함 이송시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(접수상황이 기재된 전산출력분 포함), 재외투표 접수록도 함께 가지고 가야함.

※ 우편투표함, 관내사전투표함 및 재외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기 전에 반드시 투표함의 봉쇄·봉인상태를 재확인하되, 이송에 동반할 개표참관인에게 투표함 특수봉인지의 보안성에 대해 설명한 후, 우편투표함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고 확인서 징구

II

투표함 등 접수



1. 선거일투표함 등 확인·접수
2. 선거일투표함 등 인수·적치

1

선거일투표함 등 확인·접수



접수준비 상황 점검 및 참관안내

- 접수석 용품 비치상황 점검 및 담당자 배치상황 확인
- 개표참관인에게 투표함 등 접수상황을 참관하도록 사전 안내

투표함 이상유무 확인

- 투표함의 투표지 투입구에 특수봉인지 부착 및 투표관리관·투표참관인이 성명을 기재하였는지 여부
- 투표함 앞·뒤쪽을 일회용 자물쇠로 봉쇄하였는지 여부, 자물쇠 부분에 특수봉인지 부착 및 투표관리관·투표참관인이 성명을 기재하였는지 여부
- 특수봉인지가 훼손되었는지 여부
- 투표함에 투표구멍을 기재하였는지 여부

접수부 비치물품

- 필기도구 • 스테플러 • 종이(스카치)테이프 • 자 • 바구니 • 투표용지 배부표
- 선거인수 현황표 • 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 인계서 • 특수봉인지 • 복사기(필요시)
- 투표함 접수부 리플릿 • 투표함 등 봉쇄·봉함·봉인 누락 등에 대한 확인서
- 투표록 기재사항 누락 등에 대한 확인서

● 투표함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처리요령

■ 투표함 특수봉인지의 부착 및 성명기재에 이상이 있거나 투표구멍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

- 해당 투표관리관 및 투표참관인을 별도 장소에 대기하도록 조치
-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원인을 규명한 후 투표관리관 및 동반한 투표참관인의 확인서를 받아 이의제기에 대비하고 투표관리관에게 투표함을 보완하게 함.(확인서는 개표록 또는 개표 및 선거록 맨 마지막 장에 편철·관리)

※ 투표함 송부과정에 대한 개표참관인 이의제기 시 투표함에 부착된 '투표함 관리번호(홀로그램 스티커)' 확인을 통해 정규 투표함을 입증함.

■ 투표관계서류 투입봉투 및 투표록에 이상이 있을 경우 투표관리관 및 동반한 투표참관인에게 확인서(부록 4)를 제출받아 이의제기에 대비하고 투표관리관에게 정정하게 함.

투표관계서류
확인·접수

- 투표관리관이 제출하는 인계서에 의하여 투표관계서류 봉투 및 해당 봉투의 봉합·봉인여부 확인
 ※ 투표관계서류(6종) : 투표록 봉투, 선거인명부 봉투, 잔여투표용지 봉투, 일련번호지 봉투, 거소투표 선거일 회수 봉투(반납한 회송용봉투·거소투표용지, 미리 기표한 거소투표지), 훼손된 투표용지 등 봉투
- 투표록 봉투는 접수 즉시 봉인상태 확인 후 ‘투표록 확인’ 담당자에게 인계

투표록 확인
및
투표록 부착

- 표지의 투표소명, 내지의 각 항목별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고 마지막 부분에 작성자와 확인자의 기재란에 이름을 적고 성명을 기재하거나 도장을 찍었는지 여부
- 투표록의 각 쪽 사이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으로 간인하였는지 여부
- 투표용지 수령·교부·잔여매수 및 일련번호가 적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
 ※ 특히 투표자수와 투표용지 교부매수의 일치여부 중점 확인
- 투표록의 “투표상황 및 투표용지 수령·교부상황”이 기재된 면을 필요수량 만큼 복사하여 투표함 위에 부착하고, 투표록은 보고석 등에서 별도 관리함.

2

선거일투표함 등 인수·적치



투표함 등
인수

- 투표함, 투표관계서류, 투표록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때에는 투표 관리관이 작성한 ‘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 인계서’에 접수담당자가 접수 일시 및 점검결과를 작성하고 성명을 기재하거나 도장을 찍은 후 별도 보관함.
- 선거인명부, 잔여투표용지, 일련번호지, 거소투표 선거일 회수 봉투(반납한 회송용봉투·거소투표용지, 미리 기표한 거소투표지) 등 투표관계서류는 선거가방(또는 투표소물품세트 상자)에 다시 넣고 별도 지정된 장소에 보관·관리함.

투표함
적치

- 선거일투표함은 개표소내 구획된 장소에 적치함.

투표록 작성예시

아. 투표 상황	선거명	선거인명부 등재자수 (사전투표자수, 거소·선상투표 신고인수 및 국외부재자 신고인수 제외) (가)	투 표 자 수					비고
			선거인명부 등재자 (1)	거소투표용지 미발송·반송자 (2)	결정서지참자 (3)	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 반납자 (4)	귀국투표자 (5)	
아. 투표 상황	지역구 국회의원	3,715	2,900	1		3	1	2,905
	비례대표 국회의원	3,718	2,901	1		3	1	2,906
자. 투표용지 수령·교부 상황	선거명	수령매수(다)	교부매수(라)		잔여매수(마=다-라)			
	지역구 국회의원	3,700	2,905		매수(마)	투표용지일련번호		
	비례대표 국회의원	3,700	2,906		795	(No. 6751, 9007 ~ 9800)		
					794	(No. 9007 ~ 9800)		

오·훼손으로
미교부 투표용지

투표록의 투표상황과 투표용지 수령·교부상황 확인방법

■ “아. 투표상황” 확인

- 투표자수 중 “선거인명부등재자(1)+거소투표용지 미발송·반송자(2)+결정서지참자(3)+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 반납자(4)+귀국투표자(5) =계(나)”인지 여부 확인

■ “아. 투표상황”과 “자. 투표용지 수령·교부상황” 대조

- 구·시·군위원회 투표용지배부표의 “투표용지배부매수”와 “자”의 “수령매수(다)”의 일치여부 확인
※ 투표함 접수부에 비치된 ‘투표용지 배부표’를 활용
- “아.”의 “계(나)”=“자.”의 “교부매수(라)”인지 여부 확인
※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투표관리관에게 문의하고 투표록의 별도 기재사항 등에 의해 확인

■ “자. 투표용지 수령·교부상황”

- “수령매수(다)-교부매수(라) = 잔여매수(마=다-라)”인지 여부 확인
※ 잔여매수는 투표용지일련번호로 확인하고 필요시 잔여투표용지 봉투를 개봉하여 매수(일련번호) 확인

Ⅲ

개표개시



1. 개표개시 선언
2. 개표사무관계자 선서
3. 진행요령 등 안내

1

개표개시 선언



- 개표관계자의 출석 등 준비가 완료되면 위원장이 개표개시를 선언하고 국민의례를 진행함.

2

개표사무관계자 선서



- 위원·직원 및 개표사무원 전원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함.

선서 예문

우리 ○○○선거관리위원회 위원·직원 및 개표사무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개표사무를
관리함에 있어,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성실하게
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.

2020년 4월 15일 개표사무원 대표 ○○○

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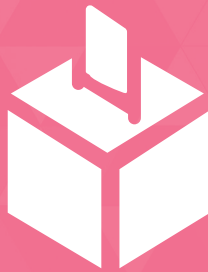
진행요령 등 안내



- 위원장 인사
- 개표진행요령 등 안내(사무국·과장 등)

IV

개표진행



IV-1. 선거일투표의 개표

1. 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 정리
2. 정당·후보자별 투표지 분류
3. 투표지 심사·확인 및 집계
4. 개표상황표 확인
5. 정당·후보자별 득표수 검열·공표
6. 개표상황 보고
7. 투표지 등 정리·보관

● 개표개시

-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개표를 개시할 수 있음.
- 개표는 투표구 단위로 개표함.

1

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 정리 [개함부]



① 투표함 개함



투표함 이상유무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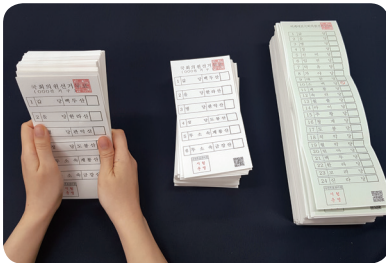
-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위원 또는 개함부 (책임) 사무원이 투표함의 특수봉인지 부착 및 성명 기재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.
※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함.
- 개표 개시 전에 도착한 투표함은 일괄하여 그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음.
※ 개표개시 이후에 도착한 투표함은 개표도중에 일괄 확인할 수 있음.



투표함 개함

- 이상이 없는 경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투표함을 열고 개함상 위에 투표지를 쏟은 후 개함상 전체에 펼침.
※ 투표함에 부착된 투표록 사본은 책임사무원에게 인계
- 투표함 내부에 투표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빈 투표함은 지정된 장소에 적치함.
※ 투표지가 분실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표함바닥면이나 개함상 아래 등을 철저히 확인

② 투표지 정리



투표지 구분·정리의 중요성

- 선거(구)별로 투표지를 정확히 구분하여 투표지가 혼입되는 일이 없도록 함.
- 투표지를 가지런히 정리하지 않으면 투표지가 걸려 투표지분류기가 멈추게 됨.
- 투표지분류기가 멈추면 걸린 투표지를 꺼내고 다시 작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개표가 늦어지게 됨.

투표지 정리방법

- 접혀있는 투표지가 없도록 한 장씩 펼쳐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하고 선거(구)별로 구분함.
 - ※ “공개된 투표지”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투표지도 다른 투표지와 함께 정리하여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 인계
- 일정한 양이 되면 책임사무원쪽으로 보내거나 별도로 지정된 사무원이 수거하도록 함.
 - ※ 고무줄을 사용할 경우 투표지분류기 투입시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.
- 1개 투표구의 투표지 정리가 끝나면 주변에 떨어진 투표지가 없는지 확인함.
- 심하게 구겨지거나 찢어진 것, 끈적끈적한 물질이 묻어 있는 것 등 오·훼손 투표지는 책임사무원에게 따로 전달.

③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 인계



정리한 투표지 및 투표록 사본 인계

- 정리한 투표지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하여 운반용기(바구니 등)에 선거(구)별로 담고,
- 해당 투표구의 투표록 사본을 운반용기 맨 위에 올려 놓아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 인계
- “오·훼손된 투표지”는 투표지분류기 운영요원이 정상 투표지 분류가 끝난 후 “기기 미투입 매수”로 입력할 수 있도록 별도 구분하여 인계

※ 수작업 개표 시에는 개함·점검부(또는 점검부)에 인계

개함부 비치물품

- 필기도구 • 투표지 운반용기 • 절단기 • 잘못 투입·구분된 투표지 봉투
 - 개함부리플릿(책임사무원용, 개표사무원용)
- 〈수작업개표시 유·무효투표집계전 및 개표상황표 서식 준비〉

2

정당·후보자별 투표지 분류

[투표지분류기운영부]



① 투표지분류기 운영 준비

투표용지 등록

- 투표지분류기 운영 PC화면에 현재시간 설정여부 확인
※ 특히 오전, 오후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
- 당초 등록한 투표용지에 이상이 있는 경우 기표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재등록
※ 개표소에서 등록할 경우를 대비하여 무번호 투표용지(사전투표용지 포함) 2~3매를 준비하고 사전에 '투표용지 작성·관리록'에 기재

후보자 등록

- 업무포털(내부전산망)에서 후보자정보 등 기초코드를 다운받아 등록
※ 투표용지에 인쇄된 정당·후보자와 운영프로그램에 등록된 정당·후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함.
- 사퇴·사망·등록무효된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적재함 미지정 또는 특정 적재함 지정(모두 재확인대상 투표지로 분류)

투표지 적재함 지정

- 정당·후보자수가 5이하인 경우 정당·후보자마다 2개 지정
- 정당·후보자수가 6이상인 경우 득표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당·후보자는 2개 지정, 기타 정당·후보자는 1개 지정하거나 1개 적재함에 2~4의 정당·후보자 지정
※ 하나의 적재함에 2이상의 정당·후보자를 지정해도 득표수는 정당·후보자마다 각각 계산됨.
※ 하나의 정당·후보자에 2개의 적재함을 지정한 경우 적재함 번호는 가급적 연이어 지정(1·2번, 3·4번 등)
- 재확인대상 투표지는 가급적 적재함 끝번호로 2개 지정(11번·12번)하되, 상황에 따라 1개 지정 가능
- 적재함 번호는 정당·후보자 기호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

② 투표지분류기 운영담당자 업무분담

[투표지 정리담당 사무원]

- 투표록 사본을 운영요원에게 인계
- 접힌 투표지, 방향이 틀린 투표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일정매수 단위로 가지런히 정리하여 운영요원에게 넘겨줌.
※ 사전투표지의 경우 일련번호 절취부분이 없으므로 정리된 투표지 방향 확인 철저
- 오·훼손된 투표지 등 투표지분류기를 통과시키지 않는 투표지는 운영요원에게 별도로 구분·인계
- 일련번호지가 완전히 절취되지 않은 채로 발견된 경우 일련번호지를 절취하고 별도의 봉투에 담아 따로 보관하였다가 투표지분류기운영 종료 후 전임직원에게 인계

[투표지분류기 운영요원]

- 투표지를 투표지분류기에 투입하기 전에는 투표지 정리담당사무원과 함께 투표지를 정리함.
- 투표록 사본에 의해 선거(구)명, 읍·면·동명, 투표구명 등을 선택하고 투표용지교부수 및 투표함수를 운영 PC에 입력한 후 투표록 사본은 책임사무원에게 인계하고 투표지 투입 및 분류
- 투표지분류기 운영중 투표지 걸림장애 발생시 투표지분류기와 화면의 투표지 이미지를 대조 후 정확히 처리함.
※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하여 이미 분류완료된 투표지를 다시 통과시킬 경우 투표수가 많아지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
- 투표구의 분류가 끝나면 오·훼손 등의 사유로 분류기에 투입하지 아니한 투표지 매수를 '기기 미투입 매수'로 입력하고 개표상황표를 출력함.
- 투표지분류기에 투입하지 아니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 등을 책임사무원에게 인계함.

투표지 정리·투입시 유의사항 등

■ 투표지가 일정한 간격으로 투표지분류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평평하게 정리한 후 끝선을 반듯이 정리하여 운영요원에게 넘겨주어야 함.

■ 올바른 투표지 정리 및 투입예시



[적재함 담당사무원]

- 적재함을 2개 지정한 정당·후보자의 투표지는 적재함이 바뀔 때마다(100매 단위) 꺼내어 고무밴딩함.
- 적재함을 1개 지정한 정당·후보자의 투표지는 100매 단위로 꺼내어 고무밴딩함.
- 2이상의 정당·후보자를 지정한 적재함의 투표지, 재확인대상 투표지는 적정매수(100매 정도) 단위로 꺼내어 고무밴딩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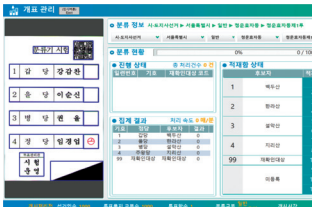
※ 2이상의 정당·후보자를 지정한 적재함의 투표지는 정당·후보자별로 분류하여 고무밴딩

- 해당 투표구의 투표지분류가 완료되면 정당·후보자별로 고무밴딩하고 재확인대상 투표지와 함께 책임사무원에게 인계함.

[책임사무원]



- 운영요원으로부터 투표록 사본을 받아 별도 관리함.



- 투표지 분류 시작 전 운영 PC화면에서 투표지 분류정보 (선거(구)명, 투표구분, 읍·면·동명, 투표구명, 투표용지 교부수 등) 입력내용을 재확인함.
- 오·훼손 투표지 등 투표지분류기에 투입하지 아니한 투표지가 있는 경우 “기기 미투입 매수”란 입력내용을 재확인함.

※ 투표구 단위의 분류가 끝나면 주변에 떨어진 투표지가 없는지 확인함.

유효투표집계전 (분류된투표지)			
00선거(구) 중앙동 제 1 투표구			
기 호	△ 변		
후보자(정당명)	△ 스△		
점 검 · 확 인			
부서명	득표수	점검·확인 (책임사무장)	
심사: 집계부			

- 정당·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 묶음 위에는 유효투표 집계전을, 재확인대상 투표지에는 재확인대상 투표지 표시전을 각각 올려놓고 고무밴딩함.

※ 유효투표집계전에는 선거(구)명, 투표구명, 기호, 후보자(정당) 명만 기재

개 표 상 황 표			
국립의료원(선거관리위원회) 2022-01-27 13:58:11			
1. 투표지분류 결과(2022-01-27 13:58:11)			
투표지수	신용지수	투표지수	투표지수
1	1,000	1,000	
2. 투표지분류 결과(2022-01-27 13:58:11)			
투표지	신용지수	투표지	투표지
1	1,000	1,000	
3. 투표지분류 결과(2022-01-27 13:58:11)			
투표지	신용지수	투표지	투표지
1	1,000	1,000	
2	1,000	1,000	
3	1,000	1,000	
4	1,000	1,000	
5	1,000	1,000	
6	1,000	1,000	

- 출력된 개표상황표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성명을 기재하고
- 투표지, 투표록 사본 등과 함께 운반용기에 담아 심사·집계부에 인계함.

※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이상여부 재확인

투표지분류기 운영시 유의사항

- 투표지 투입이 숙달된 경우 투표지분류기가 멈추지 않도록 투표지를 가지런히 정리하여 연속 투입해야 함.
- 재확인대상 투표지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거나 갑자기 높아지는 때에는 이미지인식부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.
- 개표참관인 등이 투표지분류기에 근접하여 작업을 방해하거나 기기나 전기코드에 장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유의함.
- 분류도중 걸림장애가 발생했을 경우는 개표참관인 참관하에 처리요령에 따라 차분하게 대처함.
- 투표지분류기 주변에 강한 조명이나 카메라 플래쉬 등이 투사되면 각종 센서가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
- 투표구 단위로 분류할 때마다 먼지제거캔을 활용하여 청소 및 점검 필요

투표지분류기 운영부의 잘못 투입·구분된 투표지 처리요령

- **투표지를 분류하기 전에 잘못 투입·구분된 투표지가 발견된 경우**
 - 잘못 투입·구분된 투표지를 '잘못 투입·구분된 투표지 봉투'에 넣은 후 봉투 겉면에 선거(구) 명과 투표지 매수를 기재하고 책임사무원이 성명을 기재하여 전임직원에게 인계
 - ※ 해당 잘못 투입·구분된 투표지를 별도 가려내지 않고 투표지분류기를 통과시켜 처리할 수 있음
- **잘못 투입·구분된 투표지가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경우**
 - 해당 잘못 투입·구분된 투표지는 재확인대상 투표지 적재함으로 들어가므로(개표상황표의 재확인대상 투표지수에 계산됨)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는 이를 처리하지 않고 심사·집계부에 인계함.

● 투표지 걸림장애처리 요령

- 투표지 걸림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미 인식된 투표지는 순서대로 적재함 번호가 표시되므로 걸린 투표지와 이미지를 대조한 후 해당 적재함에 투입하고, 인식되지 않은 투표지는 운영PC 화면에 'R'로 표시되므로 다시 투입·분류함.
- 재투입대상 투표지 적재함으로 적재된 투표지는 분류되지 않은 투표지이므로 다시 투입·분류함.

③ 심사·집계부 인계

분류된 투표지	선거(구)명, 투표구명, 기호, 후보자(정당)명을 기재한 유효투표집계전을 해당 정당·후보자의 투표지 묶음 위에 올려놓고 각각 고무밴딩함.
재확인대상 투표지	- 재확인대상 투표지와 투표지분류기 미통과 투표지(오·훼손투표지 등)는 “재확인대상 투표지 표시전”을 그 위에 올려놓고 함께 고무밴딩함. ※ 재확인대상 투표지 표시전에는 선거(구)명, 투표구명, 매수를 기재하고 책임사무원이 성명을 기재함.
투표지 및 개표상황표 인계	정당·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, 재확인대상 투표지를 운반용기에 담고 투표록 사본과 개표상황표를 맨 위에 올려놓고 심사·집계부로 인계
투표지분류기 운영부 비치물품	- 필기도구 - 유효투표집계전(분류된 투표지) - 재확인대상 투표지 표시전 - 고무줄 - 투표지분류기운영부 리플릿 - 잘못 투입·구분된 투표지 봉투

3

투표지 심사·확인 및 집계 [심사·집계부]



① 분류된 투표지의 심사·확인

투표지의 심사·확인	-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이용하여 다른 정당·후보자의 투표지 또는 무효 투표지 혼입여부, 득표수 이상여부를 전량 확인 ※ 투표지심사계수기 운영인원은 정당·후보자수, 개표사무원수를 고려하여 운영 ※ 책임사무원은 개표참관인도 투표지심사계수기를 통하여 육안으로 직접 투표지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 - 투표지분류기운영부와 득표수(계수) 차이 발생시 책임사무원이 원인규명 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 전달하여 재분류 실시
---------------	---

유효 투표지 확인 사항

- 다른 정당·후보자의 투표지가 들어 있는지 여부
- 무효로 처리되어야 할 투표지가 있는지 여부
-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이용하여 100매 묶음의 매수 및 혼입여부 재확인
※ 투표지분류기에서 100매 단위로 고무밴딩되지 않은 후보자의 투표지는
투표지심사계수기를 이용하여 100매 단위로 고무밴딩

유효투표 집계전 작성

- 심사·확인이 끝나면 투표구 단위로 정당·후보자별 득표수를 집계하여
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 인계받은 유효투표집계전에 득표수를 기재하고
해당 후보자의 유효투표지 맨 위에 올려 놓음.
- 유효투표집계전에는 책임사무원이 확인한 후 성명을 기재함.

유효투표집계전(분류된 투표지)		
선거구) 중앙동 제1 투표구		
기 호	△번	
후보자(정당)명	△△△	
점 검 확 인		
부 서 명	득 표 수	점검·확인 (책임사무원 성명)
심사·집계부	300	김○○

● 분류된 투표지 확인과정에 다른 정당·후보자의 투표지가 혼입된 경우 처리요령

〈이런 사례는 대부분 투표지분류기에서 투표지를 꺼내 정리·이송하는 과정에서 섞인 경우 발생하므로
투표지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함.〉

■ 투표지심사계수기 정지 버튼 클릭 ⇒ 해당 투표지 재확인

- ① 이상이 없는 경우 ⇒ 시작 버튼 클릭(심사·확인 재진행)
- ② 다른 정당·후보자의 투표지 혼입 또는 무효투표지로 판단되는 경우
⇒ 책임사무원은 즉시 당해 사무국(과)장에게 보고하고, 그 지휘를 받아 다음과 같이 처리함.
 - 혼입된 투표지를 해당 정당·후보자의 투표지 또는 무효투표지로 바로 잡은 후,
 - 모든 정당·후보자의 유효투표지 매수를 투표지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하고 투표지분류기운영부의
정당·후보자별 득표수와의 이상여부를 확인

② 재확인대상 투표지의 구분·심사

투표지 심사 및 정당·후보자별 분류

-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전량 심사·확인하여 유효표와 무효표로 구분하고 유효표는 다시 정당·후보자별로 구분함.
- 투표지에 “공개된 투표지”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경우 무효 처리함.
※ “공개된 투표지” 고무인의 “투표관리관 확인”란에 투표관리관 성명이나 도장이 누락되어 있으나 투표록 “〈별지 제4호〉 7. 공개된 투표지 처리상황”에 그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무효처리함.

집계전 작성

- 유효투표지는 투표구 단위로 정당·후보자별 득표수를 집계하여 유효투표 집계전을 작성하고 책임사무원이 확인한 후, 성명을 기재함.
- 무효투표지는 투표구 단위로 1장의 무효투표집계전을 작성하여 책임사무원이 확인한 후 성명을 기재함.

유효투표집계전(재확인대상 투표지)		
선거(구) 중앙동 제1 투표구		
기 호	△번	
후보자(정당)명	△△△	
점 검 확 인		
부 서 명	득 표 수	점검·확인 (책임사무원)
심사·집계부	3	김OO

무 효 투 표 집 계 전		
선거(구) 중앙동 제1 투표구		
부 서 명	무효 투표수	점검·확인 (책임사무원 성명)
심사·집계부	5	김OO

- 재확인대상 투표지 표시전은 따로 보관하고 개표종료 후 전임직원에게 인계

유·무효투표집계전 작성시 유의사항

- 투표지분류기가 분류한 투표지의 유효투표집계전과 재확인대상(투표지분류기에 투입하지 않은 투표지 포함)으로 분류되어 심사·집계부에서 별도 심사한 투표지의 유효투표집계전은 각각 작성함(색상을 달리하여 작성할 수 있음).
- 재확인대상 투표지의 정당·후보자별 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에서 정당·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 묶음과는 구분되게 별도로 묶은 후, 정당·후보자별로 다시 하나로 묶음.

3 개표상황표 작성

○○위원회

개 표 상 황 표

[기기번호 : 1]

○○○○ 선거 ○○읍·면·동 제 투표구

1.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: 년 월 일 시 분

2.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결과(③, ④란은 심사·집계부에서 기재)

투표함수	선거인수 (①)	투표용지 교부수(②)	투표수 (③)	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의 차(④=②-③)
1	1,000	988	988	-

3. 후보자별 득표상황(재확인대상 투표지(㉔) 중 다른 선거(선거구) 투표지는 심사·집계부에서 아래 “4번”란에 기재)

구 분		부 서 별	투표지분류기 운영부 (분류결과)	심사·집계부(제 반)			정 정	
				분류된 투표지 확인결과(a)	재확인대상 투표지 확인결과(b)	계 (투표수) (a+b)	사 유	정정자 성명
분류된 후보자별 득표수	1	갑 당	백두산	405	2	407		
	2	을 당	한라산	246	0	246		
	3	병 당	관악산	87	3	90		
	4	정 당	도봉산	237	3	240		
	소계(㉔)		(A) 975	975	8	983		
재확인대상 투표지수(㉔) ()에는 투표지분류기에 투입하지 않은 투표지 수를 적고 본수에 포함			15 (0)	무효 투표수	5	5		
투표지 총수(㉔+㉔)			990	(A) 975	13	988		
책임사무원 성명		장금이		공 명 이				

4.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다른 선거(선거구) 투표지 내역

선거명	○○ 선거	○○ 선거	○○ 선거	○○ 선거
매 수	1	1		

- ▶ 투표지심사계수기를 통해 분류된 후보자별 유효투표지를 심사·확인한 후 개표상황표의 “분류된 투표지 확인결과”란에 기재함.
- ▶ 재확인대상 투표지를 유·무효로 분류한 후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분류하여 유효투표 집계전과 무효투표집계전에 의하여 개표상황표의 “재확인대상 투표지 확인결과”란을 작성함.
- ▶ “분류된 투표지 확인결과”+“재확인대상 투표지 확인결과”=“계(투표수)(a+b)”란에 합산 기재함.
- ▶ 2.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결과의 “투표수(③)”, “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의 차(④)” 기재
- ※ 투표수는 “3. 후보자별 득표상황” 심사·집계부의 계(투표수)(a+b)와 같아야 함.
- ▶ 투표수는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·확인함.
- ※ 투표용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거나 투표용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이 적은 경우에는 다른 투표구 투표지 혼입여부, 투표록, 잔여투표용지 등을 확인하여 원인을 규명함.
- ※ 같은 선거(구)의 다른 투표구 투표지가 혼입되어 투표용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경우 해당 투표구 투표지는 재분류하여 개표상황표를 재출력하고, 다른 투표구 투표지는 “잘못 투입·구분된 투표지 봉투”에 넣어 전임직원에게 인계
- ▶ 개표상황표에는 책임사무원이 확인 후 성명을 기재함.
- ※ 세부 작성방법은 부록의 “개표상황표 작성 예시” 참조
- ▶ 개표상황표는 투표지를 담은 운반용기와 함께 개표상황표 확인석으로 인계함.

수작업에 의한
개표절차

- 수작업에 의한 투표지 분류 등 개표절차와 방법은 ‘IV-3. 거소·선상투표 및 관외사전투표의 개표방법’ 참조. (본 매뉴얼 37~41쪽 참조)

잘못 투입·
구분된 투표지가
재확인대상
투표지에
있을 경우

- 개표상황표의 “4.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다른 선거(선거구) 투표지 내역”란에 선거(구)명과 그 매수를 수기로 기재함.

※ 3. “투표지분류기운영부”란에 기재된 “투표지 총수”는 수정하지 아니함.

⇒ “투표지분류기운영부 투표지 총수” = “심사·집계부 투표지 총수” + “다른 선거(구) 투표지수”

- 잘못 투입·구분된 투표지를 “잘못 투입·구분된 투표지 봉투”에 넣어 해당 투표구의 투표지 등과 함께 위원검열석을 거쳐 위원장에게 인계(32쪽의 방법으로 별도 개표)

※ 봉투 겉면에 선거(구)명 및 잘못 투입·구분된 투표지 매수를 기재하고 잘못 투입·구분된 투표지가 발견된 투표구명을 기재한 후 책임사무원이 성명을 기재함.

심사·집계부
비치 물품

- 필기도구 • 고무밴드 • 계산기 • 클립 • 투표지심사계수기
- 유효투표집계전(재확인대상 투표지) • 무효투표집계전 • 이의제기투표처리전
- 유·무효투표예시 리플릿 • 심사·집계부 리플릿(책임사무원용, 개표사무원용)
- 잘못 투입·구분된 투표지 봉투

4

개표상황표 확인 [개표상황표 확인식]



개표상황표 확인·점검표 활용

- 개표상황표 확인식 책임사무원은 “개표상황표 확인·점검표”를 활용하여 계수착오여부 등 개표결과 작성의 적정성을 확인 후 ‘개표상황표 확인자 성명’란에 성명을 기재하고, 미비점 발견시 해당 부서 책임사무원 등에게 원인을 규명하여 보완하도록 조치함.

※ 계수착오, 정정내용의 정확성 및 사유 기재, 성명기재 누락, 투표지분류 개시 시각 적정여부, 투표지분류기운영부의 정당·후보자별 득표수와 심사집계부의 분류된 투표지 확인란의 차이 여부, 2.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 결과의 “투표수(③)”와 3. 후보자별 득표상황의 심사·집계부 “계(투표수)(a+b)” 일치 여부,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의 차이 등 중점 확인

위원검열석에 인계

- 해당 투표구의 모든 투표지를 운반용기에 담고 투표록 사본, 개표상황표를 그 위에 올려놓은 후 위원검열석에 인계함.

개표상황표 확인식 비치물품

- 필기도구 • 계산기 • 개표상황표 확인·점검표

5

정당·후보자별 득표수 검열·공표

[위원검열석 및 위원장석]



위원 검열

- 출석한 위원은 개표상황표 확인석에서 인계받은 투표구의 정당·후보자별 득표수, 무효투표수 등을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성명을 기재하거나 도장을 찍음.

개표결과 공표

- 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정당·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함.
 ※ 득표수에 이상이 있어 수정보고하는 경우 반드시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다시 공표하고 당초 개표상황표의 공표시각을 수정·기재하도록 함.
- 개표결과 공표는 개표소내 일정한 장소에 개표상황표(사본)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, 언론사나 참관인 등이 개표진행상황을 요구하는 경우 개표상황표 사본, 개표집계상황표를 출력하여 제공 가능
 ※ 개표장 밖에서 선거구민이 요구하는 경우 개표상황표 사본 제공 가능
- 개표결과를 반드시 위원장 공표 후 보고하고, 위원장 보조사무원은 개표상황표에 위원장 공표시각을 정확히 기재함.
 ※ 위원장 공표시각을 사후에 일괄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
 ※ 언론사 등이 위원장 공표 전 개표상황을 보도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안내·교육 및 보도 금지 장내방송 실시

위원석 비치물품

- 필기도구 • 위원 도장 • 인주 • 계산기 • 개표관리매뉴얼
- 유·무효투표예시리플릿

위원장석 비치물품

- 필기도구 • 위원장 도장 • 인주 • 계산기 • 무효처리된 우편투표지 고무인
- 선거관계법규집 •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• 개표사무원 배치도 • 참관인 명단
- 개표진행시나리오 • 개표관리매뉴얼 • 유·무효투표예시리플릿

6

개표상황 보고 [보고석]



개표상황 입력·보고 및 확인

- 보고담당 직원은 위원장이 개표상황표를 공표하면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정당·후보자별 득표수를 보고용 PC에 정확하게 입력함.
※ 개표상황표 우측상단에 출력되는 2차원 바코드(QR코드)를 스캔하여 선거(구)명, 읍·면·동명, 투표구명, 투표용지교부수 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기본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
※ 특히, 2.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 결과의 “투표수(㉓)”와 3. 후보자별 득표상황의 심사·집계부 “계(투표수)(a+b)”가 상호 일치하는지 확인(불일치하는 경우 심사·집계부 책임사무원이 직접 수정하도록 함.)
- 보고책임자는 정당·후보자별 득표수 이상 유무, 부서별 책임사무원란이나 위원(장)란의 성명 기재 또는 도장 날인,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및 위원장 공표시각 기재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전송·보고함.
※ 보고책임자는 개표결과 입력 및 집계에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력된 ‘개표집계상황표’와 ‘개표상황표’를 상호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전송
- 개표상황을 입력·전송한 후 공표된 개표상황표를 시·도위원회에 FAX 송부하고 시·도위원회는 개표상황표 작성 적정여부, 전송자료와의 일치여부 등 확인

● 보고석 운영 관련 참고사항

- 보고업무의 안정성·정확성 확보를 위해 보고석 주변(1미터 이상 2미터 이내로 하되 개표장 여건에 따라 적의 조정)에 ‘질서유지선’을 설치하고, 개표참관인은 반드시 ‘질서유지선’ 밖에서 참관 또는 촬영하도록 안내
- 개표록, 수작업 개표상황표, 각종 집계전 등 작성·출력을 위해 보고용 PC 외에 별도 노트북 (또는 데스크탑) PC, 프린터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 용도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개표참관인에게 안내

개표상황 수정보고

- 시·도위원회 확인결과, 전송한 개표결과와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보고 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즉시 수정요청하도록 조치
- 보고책임자는 수정사유를 명확히 하여 시·도위원회에 수정요청하며 시·도위원회는 수정요청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 처리
 - ※ 시·도위원회는 수정요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고책임자에게 보완 요청
- 시·도위원회 승인완료 후 보고책임자는 개표결과 수정보고
 - ※ 투표용지교부수, 득표수 등 착오입력으로 개표상황을 수정보고한 경우 개표상황표 하단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수정보고 사실 및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
- 개표결과 보고 후 수정보고가 있는 경우 당초 개표집계상황표를 미리 출력하여 수정된 개표집계상황표와 합철하여 관리함.
 - ※ 득표수에 이상이 있어 수정보고하는 경우 반드시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다시 공표하고 당초 개표상황표의 공표시각을 수정·기재하도록 함.
 - ※ 투표지분류기로 재분류했을 경우 당초 개표상황표에 재분류한 개표상황표를 합철하여 보관하며 득표수에 변동이 없다하더라도 위원장은 개표결과를 다시 공표한 후 그 공표시각을 기재하도록 함.
- 위원장 공표시각이 기재되지 않았거나, 보고시각보다 늦은 시각으로 기재된 경우 정확히 기재(수정)하도록 위원장 보조사무원에게 인계하여 보완하도록 조치함.

보고석 비치물품

- 필기도구 • 보고용 PC • 인주 • 계산기 • 개표상황표 서식(예비용)
- 개표록, 개표 및 선거록, 선거록 • 보고관리지침 • 각종서식 • 선거관계법령집
- 전화기

● 잘못 투입·구분된 투표지 분류·집계 및 공표

- “잘못 투입·구분된 투표지 개표상황표”는 선거(구)별 1매로 작성함.
- 위원장은 모든 선거의 개표가 완료된 후에 “잘못 투입·구분된 투표지”를 선거(구)별로 유·무효별, 정당·후보자별로 구분한 후, “잘못 투입·구분된 투표지 개표상황표”를 별도로 작성·공표함.
- 해당 선거(구)의 투표수로 집계하여 그 선거(구)의 최종 개표결과를 공표하며 “잘못 투입·구분된 투표지”를 각 선거(구)별로 정리·포장함
 - ※ 빈 잘못 투입·구분된 투표지 봉투는 별도 정리상자 등에 넣고 위원장 도장으로 봉인 후 그 앞면에 “잘못 투입·구분된 투표지 봉투”라고 기재함.

7

투표지 등 정리·보관 [정리부]



투표지 정리

- 개표가 완료된 투표지는 유·무효투표집계전 등을 통해 해당 선거(구)명, 투표종류, 투표구명을 확인한 후 정당·후보자별로 유효표를 구분하여 무효표와 함께 투표지 정리상자에 넣고,
- 투표지 정리상자에는 선거(구)명, 투표종류, 투표구명을 기재한 후 봉합테이프로 봉합하고 위원장 도장으로 봉인함

[위원장 도장을 찍을 직원을 사전에 지정].

※ 개표상황표 사본을 투표지와 함께 포장가능

투표지 보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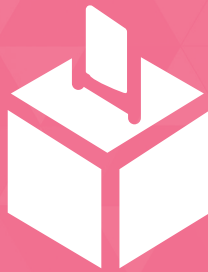
- 투표지를 봉투에 넣는 경우에는 그 봉투를 위원장 도장으로 봉인하여 다시 빈 투표함 등에 넣어 봉합하고, 그 투표함 등을 사무국·과장의 도장으로 봉인한 후 그 앞면에 선거(구)명, 투표구명을 기재함.

정리부 비치물품

• 투표지 보관상자(포장봉투) • 종이테이프 • 유성펜 • 인주 • 풀 • 가위

IV

개표 진행



IV-2. 관내사전투표의 개표

1. 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 정리
2. 정당·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및 심사·집계
3. 개표상황 확인·검열·공표·보고 및 정리 등

● 개표개시

■ 관내사전투표는 읍·면·동 단위로 개표함.

※ 동시에 실시하는 재·보궐선거의 경우, 기초·광역의원 선거의 관내사전투표는 선거구 단위로 개표함.

1

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 정리



사전투표함 개함

- 사전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면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사전투표함의 봉쇄·봉인 이상유무를 검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함함.

※ '관외사전투표함에서 발견된 투표지봉투'가 들어있는 관내사전투표함이 있는 경우 해당 투표함 먼저 개함

투표지 정리

- 1일차와 2일차 관내 사전투표함을 함께 개함하여 투표지를 정리함.

※ 개함 전에 반드시 동일 읍·면·동의 1일차와 2일차 관내사전투표함인지 여부 확인

- 정리된 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 인계하기까지 투표지 운반용기에 별도로 보관함.

※ 선거구단위로 개표하는 기초·광역의원 재·보궐선거 투표지는 해당 구·시·군위원회(국회의원 선거구)의 모든 읍·면·동 관내사전투표함 개함 완료시까지 별도 보관하고, 투표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다른 선거(구)의 사전투표지와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

2

정당·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및 심사·집계



투표지 분류

-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하여 사전투표지를 분류하는 경우에는 투표지 방향을 일치시키고 끝선을 가지런히 정리하여 투입함.

- 투표지 분류 후 투표용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거나 투표용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이 적은 경우에는 '사전투표록'상의 교부매수 등을 다시 확인하는 등 원인을 규명함.

개표절차와 방법

- 투표지분류기에 의한 개표절차와 방법은 'IV-1. 선거일투표의 개표방법'에 따름. (본 매뉴얼 16~28쪽 참조)

● 잘못 투입된 사전투표지 발견시 처리요령

- 관내사전투표함에서 “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”, “회송용봉투”, “관외사전투표함에서 발견된 투표지 봉투”, “해당위원회 관외사전투표지”가 발견된 경우 별도 지정된 전임직원에게 인계함.
-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가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“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개표상황표”를 작성하여 해당 사전투표지의 선거구를 관할하는 시·도위원회에 FAX 송부하고, “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” 봉투에 해당 개표상황표와 사전투표지를 함께 넣어 봉합하고 위원장이 봉인한 후 별도로 포장·보관
- ※ 해당위원회 사전투표지는 ‘잘못 투입·구분된 투표지 봉투’에 담아 별도 보관하였다가 선거(구)별 ‘잘못 투입·구분된 투표지 개표상황표’ 작성시 합산하여 개표

개표상황표를 FAX로 송부받은 경우 업무처리

- 시·도위원회는 팩스 송부된 「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개표상황표」를 지체없이 해당 구·시·군위원회 개표소에 팩스 송부하고, 개표결과 입력상황을 확인하여야 함.
- 팩스 송부받은 구·시·군위원회는 개표가 완료되면 “잘못 투입·구분된 투표지 개표 상황표” 작성 시 그 결과를 합산함.

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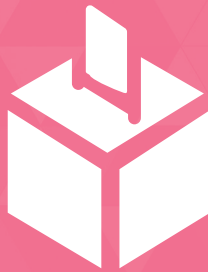
개표상황 확인·검열·공표·보고 및 정리 등



- ‘IV-1. 선거일투표의 개표’ 절차·방법과 동일하게 진행(본 매뉴얼 29~33쪽 참조)
- ※ ‘사전투표록’과 개표상황표를 함께 위원검열석에 인계함.

IV

개표 진행



IV-3. 거소·선상투표 및 관외사전투표의 개표

1. 투표함 개함 및 회송용봉투 확인
2. 봉투 개봉 및 선거(구)별 투표지 구분·정리
3. 정당·후보자별 투표지분류 및 심사·집계
4. 개표상황표 확인
5. 정당·후보자별 득표수 검열·공표 및 보고
6. 투표지 등 정리·보관

1

투표함 개함 및 회송용봉투 확인



투표함 개함

- 거소·선상투표함과 관외사전투표함은 각각 별도로 개함하여 개표를 진행함.
-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우편투표함의 봉쇄·봉인 이상유무를 검사하고, 이상이 없으면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함함.

회송용봉투 확인

- 회송용봉투를 가지런히 정리
- 회송용봉투에 붙임쪽지가 붙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무효처리

● 개봉 전 회송용봉투안 투표지 무효처리 사례 및 처리요령

■ 개봉 전 회송용봉투안의 투표지 무효처리 사례

- 회송용봉투에 ‘무효사유를 기재한 붙임쪽지’가 붙은 것
- 회송용봉투에 ‘무효사유를 기재한 붙임쪽지’가 붙어있지 않으나,
 - 정규의 회송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
 - 회송용봉투가 봉합되지 않거나 개봉한 흔적이 있는 것(회송용봉투가 투표지를 꺼낼 수 있을 정도로 찢어진 것 포함)
 - 회송용봉투에 타인의 성명·거소 기재 또는 인장이 날인된 것(거소투표에 한함)
 - ※ 봉투에 선거인 본인의 성명·거소 기재 또는 인장이 날인된 것은 유효임.
 - 구·시·군의 장으로부터 선거권이 없는 자 또는 사망한 자로 통보된 자의 투표
 - (단, 사망한 자의 경우 투표 후 사망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유효로 처리)
 - ※ 붙임쪽지 없이 무효처리하는 경우 책임사무원이 회송용봉투 겉면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성명을 기재함.

■ 무효처리하는 회송용봉투 처리방법

- 회송용봉투를 바구니에 담아 위원장에게 인계한 후 무효사유를 확인하고 개봉함.
- 위원장은 투표지 중앙 등 식별이 용이한 곳에 “무효처리된 우편투표지” 고무인을 찍은 다음 확인란에 성명을 기재하거나 도장을 찍음.
- 무효처리된 투표지는 선거(구)별로 구분하여 바구니에 담아 해당 우편투표전담부로 다시 인계하고, 해당 투표지가 들어있던 회송용봉투는 다른 회송용봉투와 따로 묶어 보관·관리함.

2

봉투 개봉 및 선거(구)별 투표지 구분·정리



회송용봉투 개봉

- 개봉기로 회송용봉투를 개봉하는 경우, 투표지가 잘리지 않도록 한쪽으로 세게 두드린 후 개봉함.

투표지 구분·정리

- 회송용봉투를 개봉하여 투표지를 꺼내 선거(구)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빈봉투는 따로 묶어서 보관·관리함
 - ※ 회송용봉투에 투표지가 전부 또는 일부 들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함.
(회송용봉투에 들어있는 투표지는 정상 투표지로 처리)
 - ※ 일부 선거(구)의 투표지만 '공개된 투표지'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투표지만 무효처리하고 나머지는 정상투표지로 처리
- 관외 사전투표지를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하는 때에는 투표지를 한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함.
- 선상투표지는 투표자의 비밀침해 등의 예방을 위해 거소투표지와 혼합하여 개표 진행

● 개봉 후 회송용봉투안 투표지 무효처리 사례 및 처리요령

■ 투표지 외에 메모·편지 등이 들어있는 경우 → 회송용봉투안 투표지 모두 무효처리

- 책임사무원은 투표지 등 내용물을 다시 회송용봉투 안에 넣고 회송용봉투 앞면에 “메모 등이 들어있음”으로 기재한 후 성명을 기재하고 다른 무효처리 회송용봉투와 함께 위원장에게 인계
 - ※ 무효처리 후 메모·편지는 소청 및 소송 등을 대비하여 다시 봉투 안에 넣어 별도 보관·관리함.

■ 같은 선거(구)의 투표지가 2매 이상 들어있는 경우 → 해당 투표지 모두 무효처리

- 책임사무원은 같은 선거(구) 투표지를 다시 봉투 안에 넣고 봉투 앞면에 “같은 선거(구)투표지 0매가 들어있음[○○선거구]”으로 기재한 후 성명을 기재하고 다른 무효처리 회송용봉투와 함께 위원장에게 인계
 - ※ 같은 선거(구)의 투표지가 2매 이상 들어있는 경우 해당 선거(구) 투표지만 무효처리하고 나머지 선거(구)의 투표지는 정상적인 투표지로 처리

■ 무효처리하는 회송용봉투 처리방법

- ‘개봉 전 회송용봉투안 투표지 무효처리 사례 및 처리요령’(매뉴얼 38쪽)과 동일

3

정당·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및 심사·집계



수작업 분류 및 집계전 작성

- 거소·선상투표지는 수작업으로, 관외사전투표지는 수작업 또는 투표지분류기로 분류

〈관외사전투표를 투표지분류기로 분류 시 개표절차는 본 매뉴얼 16~28쪽 참조〉

- ※ 투표지분류기로 관외사전투표 분류 시 구·시·군위원회 또는 우편투표함 단위로 분류할 수 있음.
- ※ 우편투표함 단위로 나누어 분류하는 경우 우편투표함 단위로 개표진행표를 출력하고 최종 개표상황표를 출력(작성)함.

----- 〈수작업 개표 시〉 -----

- 투표지를 선거(구)별로 구분하고 일정한 양이 되면 가지런히 해서 책임사무원이나 선거(구)별로 지정된 담당사무원에게 전달
- ※ 수작업 개표시 우편투표함 단위로 개표진행 가능(우편투표함 단위로 개표진행표를 작성하고 최종 개표상황표를 작성함)
- 정리된 선거(구)별 투표지를 운반용기에 담아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함.
- 투표지를 정당·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로 분류함.
- 정당·후보자별 유효투표지는 일정매수 단위로 고무밴딩하고, 무효투표지는 하나로 고무밴딩하여 책임사무원 또는 정당·후보자별로 지정된 사무원에게 전달
- 분류가 끝난 투표지는 정당·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(‘무효처리된 우편투표지’ 고무인이 찍힌 투표지 포함)를 집계하여 유·무효투표집계전을 작성하고 우편투표전담부 책임사무원이 확인한 후 성명을 기재함.
- 「유·무효투표집계전」에 의하여 「개표상황표(또는 개표진행표)」의 개함·점검부란을 작성하고 우편투표전담부 책임사무원이 확인한 후 성명을 기재함.
- 정당·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와 무효투표지를 운반용기에 담은 후 개표 상황표(또는 개표진행 표)를 맨 위에 올려놓고 심사·집계부에 인계

심사·확인 및 집계

〈수작업 개표 시〉

- 분류된 투표지 안에 다른 정당·후보자의 투표지 또는 무효투표지 혼입여부, 득표수 이상여부를 전량 확인
- 무효투표지에 유효투표지 혼입여부 및 매수 확인
- 심사·확인이 끝나면 유·무효투표집계전에 득표수(또는 무효투표수)를 기재하고 심사·집계부 책임사무원이 성명을 기재함.
- 유·무효투표집계전에 의하여 선거(구)별 개표상황표(또는 개표진행표)를 작성하고 심사·집계부 책임사무원이 성명을 기재함.
- 부서별 득표수(계수)차이 발생시 원인규명 후 개표를 진행하고 개표상황표(또는 개표진행표)에 정정사유를 명확히 기재함.

4

개표상황표 확인



- ‘IV-1. 선거일투표의 개표’ 절차·방법과 동일하게 진행(본 매뉴얼 29쪽 참조)
※ ‘거소투표 등 발송·접수록’, ‘선상투표 발송·접수상황’과 개표상황표를 함께 위원검열석에 인계함.

5

정당·후보자별 득표수 검열·공표 및 보고



- ‘IV-1. 선거일투표의 개표’ 절차·방법과 동일하게 진행(본 매뉴얼 30~32쪽 참조)

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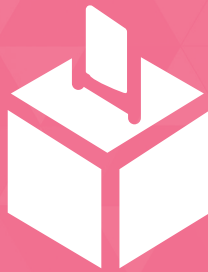
투표지 등 정리·보관



- ‘IV-1. 선거일투표의 개표’ 절차·방법과 동일하게 진행(본 매뉴얼 33쪽 참조)
※ 개봉된 빈 회송용봉투는 거소·선상 및 관외사전투표별로 각각 별도의 정리상자에 넣고 사전에 지정된 직원이 위원장 도장으로 봉인 후 그 앞면에 “○○○○ 회송용봉투”라고 기재함.

IV

개표 진행



IV-4. 재외투표의 개표

1. 투표함 개함 및 회송용봉투 확인
2. 봉투 개봉 및 투표지 구분·정리
3. 정당·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및 심사·집계
4. 개표상황표 확인
5. 정당·후보자별 득표수 검열·공표 및 보고
6. 투표지 등 정리·보관

1

투표함 개함 및 회송용봉투 확인



투표함 개함

-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재외투표함의 봉쇄·봉인 이상유무를 검사하고, 이상이 없으면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함함.
- 국외부재자 투표함과 재외선거인 투표함을 각각 설치한 경우, 국외부재자 투표함을 먼저 개함하여 개표한 후 재외선거인 투표함을 개함하여 개표함.

회송용봉투 확인

- 회송용봉투를 가지런히 정리
- 회송용봉투에 붙임쪽지가 붙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무효처리

● 국외부재자 회송용봉투 확인·분류

〈국외부재자중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비례대표선거만 해당되므로 아래와 같이 일반 주민등록자와 구분하여 개표〉

■ 국외부재자 투표함을 개함한 후 일반 주민등록자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회송용봉투로 각각 분류

- 하나의 구·시·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, 일반 주민등록자 (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)를 국회의원지역구 단위로 분류
- 분류된 주민등록자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회송용 봉투를 순차적으로 개표

● 개봉 전 회송용봉투안 투표지 무효처리 사례 및 처리요령

■ 개봉 전 회송용봉투안의 투표지 무효처리 사례

- 회송용봉투에 '무효사유를 기재한 붙임쪽지'가 붙은 것
 - 회송용봉투에 '무효사유를 기재한 붙임쪽지'가 붙어있지 않으나,
 - 정규의 회송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
 - 회송용봉투가 봉합되지 않거나 개봉한 흔적이 있는 것
(회송용봉투가 투표지를 꺼낼 수 있을 정도로 찢어진 것 포함)
 - 명부작성권자로부터 선거권이 없는 자 또는 사망한 자로 통보된 자의 투표
(단, 사망한 자의 경우 투표 후 사망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유효로 처리)
 - 한 사람이 2회 이상 투표(이중투표)한 것
- ※ 붙임쪽지(이중투표 표시)가 붙어있는 재외투표를 가려내어 무효로 처리
- ※ 접수시 이중투표로 확인 되었으나 붙임쪽지(이중투표 표시)가 붙어있지 않은 해당 재외투표는 개함 후 즉시 가려내어 모두 무효처리

■ 무효처리하는 회송용봉투 처리방법

- 'Ⅳ-3. 거소·선상투표 및 관외사전투표의 개표' 처리요령(매뉴얼 38쪽)과 동일

2

봉투개봉 및 투표지 구분·정리



회송용봉투 개봉

- 개봉기로 회송용봉투를 개봉하는 경우, 투표지가 잘리지 않도록 한쪽으로 세게 두드린 후 개봉함.

투표지 구분·정리

- 회송용봉투를 개봉하여 투표지를 꺼내 선거(구)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빈봉투는 따로 묶어서 보관·관리함
- ※ 회송용봉투에 투표지 전부 또는 일부가 들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함.
(회송용봉투에 들어있는 투표지는 정상 투표지로 처리)
- ※ 투표지에 '공개된 투표지' 표시가 날인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투표지만 무효처리하고 나머지는 정상 투표지로 처리
-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하는 때에는 투표지를 한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함.

● 개봉 후 회송용봉투안 투표지 무효처리 사례 및 처리요령

■ 투표지 외에 편지·메모 등이 들어있는 경우 → 회송용봉투안 투표지 모두 무효처리

- 책임사무원은 투표지 등 내용물을 다시 회송용봉투 안에 넣고 회송용봉투 앞면에 “메모 등이 들어있음”으로 기재한 후 성명을 기재하고 다른 무효처리 회송용봉투와 함께 위원장에게 인계
- ※ 무효처리 후 메모·편지는 소송 등을 대비하여 다시 봉투 안에 넣어 별도 보관·관리함.

■ 같은 선거(구)의 투표지가 2매 이상 들어있는 경우 → 해당 투표지 모두 무효처리

- 책임사무원은 같은 선거(구) 투표지를 다시 봉투 안에 넣고 봉투 앞면에 “같은 선거(구) 투표지 0매가 들어있음[00선거(구)]”으로 기재한 후 성명을 기재하고 다른 무효처리 회송용봉투와 함께 위원장에게 인계
- ※ 같은 선거(구)의 투표지가 2매 이상 들어있는 경우 해당 선거(구) 투표지만 무효처리하고 나머지 선거(구)의 투표지는 정상적인 투표지로 처리

■ 무효처리하는 회송용봉투 처리방법

- ‘Ⅳ-3. 거소·선상투표 및 관외사전투표의 개표’ 처리요령(매뉴얼 38쪽)과 동일

3

정당·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및 심사·집계



투표지 분류

- 재외투표지는 수작업 또는 투표지분류기로 분류
 - ※ 투표지분류기로 분류 시 본 매뉴얼 16~28쪽 참조
 - ※ 수작업에 의한 경우에는 거소·선상투표지의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(본 매뉴얼 40~41쪽 참조).

4

개표상황표 확인



- ‘IV-1. 선거일투표의 개표’ 절차·방법과 동일하게 진행(본 매뉴얼 29쪽 참조)
 - ※ ‘재외투표 접수록’과 개표상황표를 함께 위원검열석에 인계함.

5

정당·후보자별 득표수 검열·공표 및 보고



- ‘IV-1. 선거일투표의 개표’ 절차·방법과 동일하게 진행(본 매뉴얼 30~32쪽 참조)

6

투표지 등 정리·보관



- ‘IV-1. 선거일투표의 개표’ 절차·방법과 동일하게 진행(본 매뉴얼 33쪽 참조)
 - ※ 개봉된 빈 회송용봉투는 별도의 정리상자에 넣고 위원장 도장으로 봉인 후 그 앞면에 “재외투표 회송용봉투”라고 기재함.

V

개표소 질서유지



1. 개표소 출입·관람 등 제한
2. 개표질서 문란행위자 등의 처리

1

개표소 출입·관람 등 제한



개표소 질서 유지

- 경비 및 질서유지 요원은 개표소 출입자에 대한 철저한 확인·통제로 개표소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.
- 위원장은 일반관람인이 개표관람증을 달고 있지 않거나 개표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음.

공표전 보도금지

- 누구든지 위원장이 정당·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기 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에 의해서만 보도해야 함.

녹음·녹취

- 개표참관인 등이 개표진행과정에서 이익을 제기하는 경우 그 상황을 녹음·녹취하여 증거보전신청이 있을 것에 대비함.

● 개표소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

- 구·시·군위원회와 그 상급위원회의 위원·직원
- 개표사무원, 개표참관인, 개표사무협조요원(전기·통신·의료·소방 등)
- 투표지분류기·투표지심사계수기 등의 기술요원
- 관람증을 소지한 일반인(일반관람석에 한함)
- 방송·신문·통신의 취재·보도요원(보도석 및 일반관람석에 한함)
※ 개표상황 집계를 위한 언론기관 관계자의 지정장소 외 출입은 엄격히 통제함.
- 위원장이나 위원의 원조요구를 받은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의 장

2

개표질서 문란행위자 등의 처리



개표 질서 문란행위자 처리

- 위원장은 개표소에서 소란·언동 등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제지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령함.
- 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원조를 요구함.

개표지연시 처리요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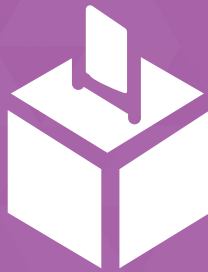
- 개표도중 사고로 특정 투표구의 개표가 지연되는 경우
 - 위원장은 그 투표구의 개표를 뒤로 미루고 다음 투표구의 개표를 진행하되, 그 상황을 개표록에 기재함.
 - 다른 투표구의 개표가 종료된 후 해당 투표구의 개표를 다시 진행함.

●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등의 준수사항

- 개표소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등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,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퇴거해야 함.
- 원조 요구를 받고 개표소에 들어가는 경찰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음.

VI

투표의 효력 결정



1. 투표의 효력 판단기준
2. 이의제기 투표지의 효력결정 방법

1

투표의 효력 판단기준

(세부사항은 “유·무효투표 예시(리플릿)” 참조)



① 투표지의 일반적 효력

유효투표	무효투표
투표용지가 오·훼손되었으나 정규 투표용지 임이 명백하고 어느 정당·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	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
-	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
- 한 정당·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- 정당·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기표된 것이 어느 정당·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	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
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정당·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	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
㉠ 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메워졌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	-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㉠ 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㉠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
-	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
-	‘공개된 투표지’ 고무인 또는 ‘무효처리된 우편투표지’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

② 거소·선상투표지의 효력

유효투표	무효투표
무인으로 기표한 것	인장의 날인·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게 표를 한 것
-	- 회송용봉투안에 같은 선거의 투표지가 2매 이상 들어있는 것 ※ 해당 선거는 모두 무효
○, △, □, V, × 등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물형으로 표를 한 것	“좋다”, “나쁘다” 등 문자를 기재한 것

③ 회송용봉투의 무효처리 [거소투표, 관외사전투표, 재외투표]

- 정규의 회송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
- 봉투가 봉합되지 않거나, 개봉한 흔적이 있는 것
- 봉투가 투표지를 꺼낼 수 있을 정도로 찢어진 것
- 봉투안에 투표지 외에 편지·메모 등이 들어 있는 것
- 봉투에 타인의 성명·거소 기재 또는 인장이 날인된 것(거소투표에 한함)
※ 봉투에 본인의 성명·거소 기재 또는 인장이 날인된 것은 유효임.
- 재외투표의 경우 2회 이상 투표(이중투표)한 것
※ 이중투표 표시(불임쪽지)가 되지 않았으나 접수시 이중투표로 확인된 것도 무효 처리

④ 선상투표 무효처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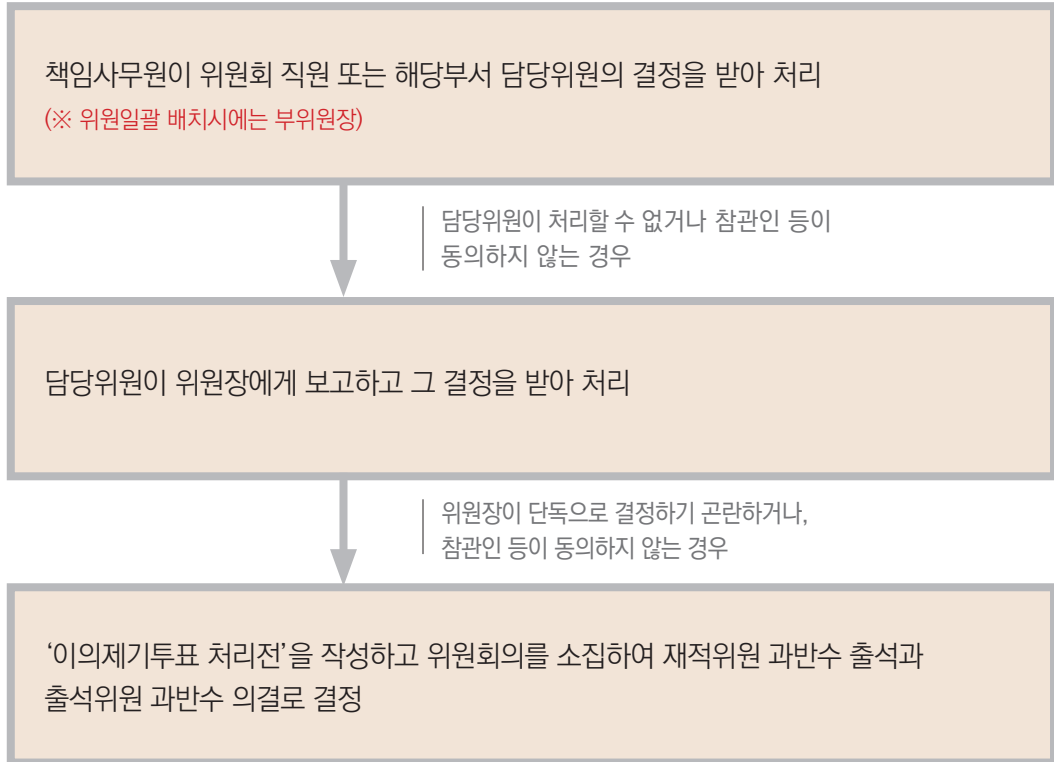
-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스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 전송한 팩스번호를 알 수 없는 것
-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외의 것
- 선거인이나 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
※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1명 뿐이어서 입회인을 두지 않아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은 제외
- 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

2

이의제기 투표지의 효력결정 방법



- 각 개표부서에서 개표참관인의 이의제기나 개표사무원의 질문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함.



-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효력을 결정한 때에는 위원장은 그때마다 그 내용을 공표하고 개표록에 그 사실을 기재함.

※ “이의제기투표 처리전”은 해당 투표지와 합철하여 관리함.

VII

부록



1. 개표상황표의 선거인수 등 기준
2. 개표상황표 작성 예시
3. 투표함 등 봉쇄·봉함·봉인 누락 등에 대한 확인서(예시)
4. 투표록 기재사항 누락 등에 대한 확인서(예시)
5. (사전)·(우편)·(재외)투표함 이상유무 확인서(예시)
6. 투표지심사계수기 사용 요령

1

개표상황표의 선거인수 등 기준



구 분	관내사전투표	관외사전투표	거소·선상투표	재외투표
선거인수 (①)	투표용지 발급자수	투표용지 발급자수	거소·선상투표 신고인명부 등재자수 ※ 미발송자 중 사전투표한 자 제외	국외부재자· 재외선거인명부 등재자수
투표함수 (②)	1·2일차 사용 투표함수	위원회에 비치한 투표함수		
투표용지 교부수 (③)	투표용지 발급자수 (①=③)	회송용봉투 접수수	회송용봉투 접수수	회송용봉투 접수수
투표수 (④)	개표결과 투표지 수			

2

개표상황표 작성 예시



○○○ 위원회

개 표 상 황 표

[기기번호 : 1]

○○○○ 선거 ○○읍·면·동 제 투표구

1.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: 년 월 일 시 분

2.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결과(③, ④란은 심사·집계부에서 기재)



투표함수	선거인수 (①)	투표용지 교부수(②)	투표수 (③)	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의 차(④=②-③)
1	1,000	988	988	-

3. 후보자별 득표상황(재확인대상 투표지(㉔) 중 다른 선거(선거구) 투표지는 심사·집계부에서 아래 “4번”란에 기재)

부 서 별 구 분				투표지분류기 운영부 (분류결과)	심사·집계부(제 반)			정 정	
					분류된 투표지 확인결과(a)	재확인대상 투표지 확인결과(b)	계 (투표수) (a+b)	사 유	정정자 성명
분류된 후보자별 득표수	1	갑 당	백두산	405	405	2	407		
	2	을 당	한라산	246	246	0	246		
	3	병 당	관악산	87	87	3	90		
	4	정 당	도봉산	237	237	3	240		
	소계(㉓)			(A) 975	975	8	983		
재확인대상 투표지수(㉔) ()에는 투표지분류기에 투입하지 않은 투표지 수를 적고 본수에 포함				15 (0)	무효 투표수	5	5		
투표지 총수(㉓+㉔)				990	(A) 975	13	988		
책임사무원 성명				장금이	공 명 이				

4.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다른 선거(선거구) 투표지 내역

선거명	○○ 선거	○○선거	○○선거	○○선거
매 수	1	1		

개표상황표 확인자 성명

5. 위원 검열

위 원	위 원	위 원	위 원	위 원	위 원	위 원	부위원장	위 원 장

6. 위원장 공표시각 : 월 일 시 분

- 투표지분류기에서 출력된 후보자별 득표수 및 재확인대상 투표지수
-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책임사무원 성명기재

【 심사·집계부에서 육안으로 정확히 심사한 후 책임사무원이 다음과 같이 수기로 기재함 】

1. 「분류된 투표지 확인결과(a)」란에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한 후 후보자별 득표수 기재
 2. 「재확인대상 투표지 확인결과(b)」란에는 재확인대상 투표지를 심사한 후 후보자별 득표수 및 무효투표수를 기재
 3. 심사·집계부의 「계(투표수)(a+b)」란에는 「분류된 투표지 확인결과(a)」와 「재확인대상 투표지 확인결과(b)」의 합을 기재
 4. 2.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결과의 “투표수(③)”, “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의 차(④)” 기재
- ※ 투표수는 “3. 후보자별 득표상황”란 심사·집계부의 계(투표수)(a+b)와 같아야 함.
5.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의 차이가 나는 경우 투표록·잔여투표용지 등 재확인
 6. 책임사무원이 확인 후 성명 기재
 7. 책임사무원이 성명을 기재한 개표상황표는 ‘개표상황표 확인석’으로 인계함

- 잘못 투입·구분된 [다른 선거(선거구)]투표지 2매가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하여 재확인대상으로 분류되어 심사·집계부의 투표지 총수와 투표지분류기운영부의 투표지 총수에 2매 차이가 발생한 것임.
- 이와 같이 잘못 투입·구분된 [다른 선거(선거구)]투표지가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경우에는 심사·집계부의 투표지 총수와 투표지분류기운영부의 투표지 총수에 차이가 발생하나 투표지분류기운영부의 투표지 총수는 정정하지 않고,
- “4.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다른 선거(선거구) 투표지”란에만 다른 선거(구) 투표지의 선거(구)명과 매수를 기재함.

※ 다른 선거(구) 투표지가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“4.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다른 선거(선거구) 투표지”란에 기재하지 않음.

투표지분류기 미사용

○○○ 위원회

거소·선상 투표 개표상황표(투표지분류기 미사용)

○○선거 ○○선거구

1.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: 년 월 일 시 분
2.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결과

투표합수	선거인수 (①)	투표용지 교부수(②)	투표수 (③)	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의 차(④=②-③)
1	1,000	990	990	0

3. 후보자별 득표상황

부서별 구 분			개합·점검부 (제 반)	심사·집계부 (제 반)	정 정	
					사 유	정정자 성명
후 보 자 별 득 표 수	1	갑 당 백두산	305	305		
	2	을 당 한라산	206	206		
	3	병 당 관악산	57	57		
	4	정 당 도봉산	207	208	심사착오	공명이
	5	신미당 계룡산	110	109	심사착오	공명이
	6	임진당 금강산	90	90		
	유효투표수 계(㉔)		975	975		
무효투표수(㉕)		15	15			
투표지 총수(㉖+㉕)		990	991 990	계수착오	공명이	
책임사무원 성명		장금이	공명이			

개표상황표 확인자 성명

4. 위원 검열

위 원	위 원	위 원	위 원	위 원	위 원	위 원	부위원장	위 원 장

5. 위원장 공표시각 : 월 일 시 분

※ 정당·후보자 수가 많은 경우 개표상황표와 유·무효투표집계전은 개서하여 사용가능

3

투표함 등 봉쇄·봉합·봉인 누락 등에 대한 확인서 (예시)



투표함 등 봉쇄·봉합·봉인 누락 등에 대한 확인서

○ 확인자

- 소 속 : 읍·면·동 제 투표구
- 직 위 : 투표관리관
- 휴대전화번호 :
- 성 명 :

○ 확인내용

상기 본인은 2020년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
(예시 : 투표마감시 투표함 자물쇠 봉인을 누락한, 투표함에 투표구명 기재를 누락한)사실이 있어
개표소에서 투표참관인(외 명)과 개표참관인(외 명)의 참관하에
(예시 : 투표함 자물쇠 봉인을, 투표함에 투표구명)을 보완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20년 4 월 일 시 분

확인자 투표관리관 : (서명 또는 날인)
참관자 투표참관인 : (서명 또는 날인)
개표참관인 :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○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주 : 사실관계 및 보완사항을 수기로 기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당한 여백을 두어 출력함.

4

투표록 기재사항 누락 등에 대한 확인서 (예시)



투표록 기재사항 누락 등에 대한 확인서

○ 확인자

- 소 속 : 읍·면·동 제 투표구
- 직 위 : 투표관리관
- 휴대전화번호 :
- 성 명 :

○ 확인내용

상기 본인은 2020년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
(예시 : 투표록의 투표용지 교부매수를 누락한, 투표록의 투표자수를 계산착오로 잘못 기재한)
사실이 있어 개표소에서 투표참관인(외 명)의 참관하에
(예시 : 투표용지 교부매수를, 투표자수를)보완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20년 4 월 일 시 분

확인자 투표관리관 : (서명 또는 날인)
참관자 투표참관인 : (서명 또는 날인)
투표참관인 :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○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주 : 사실관계 및 보완사항을 수기로 기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당한 여백을 두어 출력함.

5

(사전)·(우편)·(재외)투표함 이상유무
확인서 (예시)

(사전)·(우편)·(재외)투표함 이상유무 확인서

- 선거법상 신분 : 개표참관인
- 성 명 :
- 추천 정당 또는 후보자 :

상기 본인은 ○○선거관리위원회 ○○○로부터 (사전투표함)·(우편투표함)·(재외투표함)에 부착된 특수봉인지의 용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(사전투표함)·(우편투표함)·(재외투표함) 상태를 살펴본 후 설명내용과 같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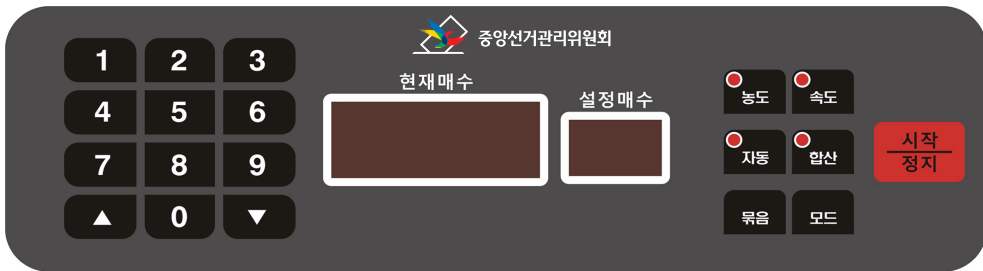
2020년 4 월 일

개표참관인 ○○○ 서명

○○○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6

투표지심사계수기 사용 요령



누름판

투표지 위에 누름판을 올려 놓은 후 계수를 시작합니다.
(**"윗면"**이라는 글씨가 위로 보이도록 합니다.)

속 도

버튼을 한번 누르면 현재 속도가 표시되고, 두번 누르면 다음 속도가 표시됩니다.
사용하고자 하는 속도를 누른 후 시작/정지 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완료 됩니다.

자 동

자동버튼을 눌러 램프가 켜지도록 합니다.
투표지를 투입부에 올려 놓으면 자동으로 계수를 시작합니다.

수 동

자동버튼을 눌러 램프가 꺼지도록 합니다.
투표지를 투입부에 올려놓고 시작/정지 버튼을 누르면 계수를 시작합니다.

묵 음

묵음 버튼을 누르면 "50" 또는 "100"매수 설정 표시가 나타나며 설정하고자 하는 매수를
선택하여 사용합니다. 설정 한 매수만큼 투표지를 계수하면 자동으로 정지합니다.

시작 정지

계수 중 시작/정지버튼을 누를 경우 현재 매수란에 계수된 매수와 STOP문구가 번갈아
표시됩니다.

*** 농도, 합산, 모드 버튼은 사용안함(A/S 처리시 사용)**

장애 처리 방법

투표지 계수 중 다음과 같은 예러로 기계가 정지 할 경우 반드시 처음부터 다시 계수 하시기 바랍니다.

E_DB

더블 에러 / 투표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투입부의 간격을 좁힌다.(반시계방향)

E_CH

체인 에러 / 투표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투입부의 간격을 좁힌다.(반시계방향)

E_JA

걸림 에러 / 기계 내부에 투표지가 걸려 있는지 확인한다.

E_EN

엔코더 에러 / 투입부 간격이 좁아져 있으므로 투입부의 간격을 넓혀 사용한다.(시계방향)

2020. 4. 15.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
개표관리 매뉴얼

발 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
 경기도 과천시 홍춘말로 44
 Tel. 02-503-2093 www.nec.go.kr



아름다운 선거
행복한 대한민국



중앙선거관리위원회